제 호

## 자동차운전학원・전문학원 행정처분통지서

학 원 명		학원								
학원의 설립·운영자	성 명									
	주 소									
행정처분 결정내용	운영정지	년	월	일 -		년	월	일까지 (	일간)	
	등록취소 · 지정취소	년	월	일						
사 유										

「도로교통법」 제1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행정 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( ) 시 ·도경찰청 교통과(계)에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(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)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시・도경찰청장

직인

## ※ 알려드립니다.

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